

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9. 8.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'99. 9. 1
- 다. 상정일자 : '99. 9. 1 (제7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김종철
- 나. 제정사유
 -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키 위함.
- 다. 주요내용
 - 민간위탁 대상 사무(안 제4조)
 -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
 -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, 분뇨처리장, 동면오폐수처리장,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, 화순온천하수종말처리장관리, 폐기물수집(청소) (별표 1)
 - 수탁기관 선정기준(안 제5조 제1항)
 - 선정시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검토
 - 수탁기관 선정(안 제5조 제2항)
 - 공개모집 원칙,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

-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설치 (안 제6조)
 -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6~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
 -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
 -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- 협약체결 (안 제7조)
 -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, 반드시 공증을 함.
 - 협약서의 내용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관, 예산지원액,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및 해약 등의 사항 포함.
-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(안 제9조)
 -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, 군수는 감독 책임
 -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함.
- 사무처리의 지원 (안 제10조)
 - 수탁기관이 필요시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,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.
- 지휘 · 감독 (안 제11조)
 -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지휘 · 감독 및 필요시 지침이나 지시 시달
 - 위법, 부당한 사무 처리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, 시정시킴
 - 사무의 취소 또는 정지시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
- 재위탁의 금지 (안 제14조)
 -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다른 기관, 법인 ·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음.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양정열)

-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『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』 안의 준칙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民間에 위탁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한 조례안임.
-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제4조에서
 -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- 기타 시설관리등의 단순 행정 사무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의 「별표 1」에 의하면 위탁사무명을 환경기초시설 관련 6개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데 백아산 휴양림관리나 군민회관 관리 등의 업무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.
- 특히, 민간위탁시는 행정의 능률성이나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공익 부문과 주민의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차질이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『협약체결』 시에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여 공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으로 인한 역기능이 아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임.
-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조례준칙안을 참고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관련 법규의 지속여부나 조례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론요지

“ 생 략 ”

6. 심사결과

“ 원안가결 ”

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

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.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민간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군수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이란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 (적용 범위)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) ①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증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의 단순행정사무

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.

제5조 (수탁기관의 선정)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적인 부담능력, 시설·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제6조 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우원장 및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“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면상조례”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.

제7조 (협약체결등)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

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관, 예산지원액,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8조 (수탁사무의 처리)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,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9조 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사무처리의 지원)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,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 (지휘·감독)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.

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에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2조 (사무편람)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 절차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3조 (처리상황의 감사)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고,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 (재위탁의 금지) 이 조례에 의하여 군수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.

제15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민간위탁 사무 (제4조 제3항 관련)

소 관	위 탁 사 무 명	수 탁 기 관 (예시)	비 고
환경과	1.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관리	환경시설 관련 법인·단체	
	2. 분뇨처리장 관리	"	
	3. 동면 오폐수처리장 관리	"	
	4. 도곡온천하수종말처리장 관리	"	
	5. 화순온천하수종말처리장 관리	"	
	6. 폐기물수집(청소) 업무	"	